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 강대식 • 이인선 • 김석기

권영세 • 이종배 • 임이자

엄태영 · 임종득 · 김예지

곽규택 · 김승수 · 최은석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·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'군 공항의 이전사업' 및 '종전부지의 개발사업'은 포함되지 않음.

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
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사업 범위에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 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9 조제1항제10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9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	제9조(사업) ①		
호의 사업을 한다.	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10. 「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		
	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		
	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		
	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		
	종전부지 개발사업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